

對外 工業所有權 紛爭事例와 通商

對美 通商(知的所有權) 紛爭과 Amikacin Case

〈前號에서 계속〉

3. 法律外的 紛爭

'85년말 Amikacin 事業拋棄 要求를 동아가 拒絕하자 BM은 위와 같은 司法的인 紛爭을 시작하는 외에 우리나라의 特許廳, EPB, 商工部, 保社部 및 外務部 등 行政府를 통해 동아의 Amikacin 사업포기를 증용하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當時의 한미통상 분위기를 時宜適切하게 이용한 效果的인 方法이었겠으나 동아의 입장으로 볼 때는 BM의 接近方法이 지나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었다.

우선 BM은 駐韓 美大使館이나 駐韓 美商工會議所(AMCHAM) 등을 通해 特許廳으로 하여금 동아의 특허 2건을 職權으로 無效시키도록 要求하였다. 이에 대해 特許廳은 동아의 特許가 有效하고 正當한 것이며, 適法한 審査節次에 의해 특허된 것임을 들어 BM측의 要請을 정중히 拒絕하는 한편, 우리 特許法에 의거 BM이 正式으로 동아특허에 대해 無效審判을 請求하면 公正하게 審理하여 속히 심결을 내겠다는 答辯을 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BM측은 위와 같은 우리 特許廳의 合理的인 방침에도 不拘하고 계속하여 동아 특허를 無效시키도록 強要하였다.

이에 特許廳으로서 더 이상 어찌 할 수 없다고 判斷하고 擔當審査官으로 하여금 동아특허에 대해 無效審判을 請求토록 한다는 決定을 내리고 말았다.

有效하게 存續하는 특허권은 무효심판에 의해서만 無效시킬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미 동아의 Amikacin 製造方法 發明이 特許性이 있다고 판단하여 특허를 許與키로 한 바 있는 擔當審査官이 중견의 決定을 번복하고 無效審判을 請求한 때는 당시 韓美間 知的所有權 摩擦이 결정적인 變數로 작용한 것이라 판단된다.

이와 같이 BM의 要請을 받아들인 특허청은 BM측이 提供하는 各種의 參證資料(예: 알젠틴·페루·뉴웨이 등에 출원된 BM의 出願書寫本과 BM측 從業員이 작성한 陳述書 등)를 바탕으로 하여 無效審判의 심리를 진행시킨 것이다. 이 무효심판에서 轉輸한 바와 같이 1件 有效, 1件 無效라는 公平한(?) 결정이 내려졌다.

이후에도 동아는 보다 큰 國益을 위해서는 Amikacin 사업을 포기하는 것이 좋겠다는 無言의 압력을 各界로부터 받아들였다. 그러나 이것이 BM측의 要請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韓·美間의 協商을 有利하게 이끌기 위한 우리측의 戰略에 의한 것인지는 분명치 않다. 推測컨대 위와 같은 이유가 모두 反映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동아는 우리의 法制度에 의해 有効하게 존재하는 특허권을 갖고 適法하게 하는 事業活動이 法律外的인 要因으로 妨害받아서는 안된다는 판단에서 Amikacin 사업을 계속하였다.

한편 '86년 3월 이후 동아와 BM은 協商을 계속해 왔으나 양측의 異見이 좁혀지지 않아 소강상태에 빠졌으며, 또한 '87년 9월 18일 Cefatrizine에 대한 假處分 申請事件 및 本案訴訟事件에서 敗하게 된 BM은 또 다른 手段을 講究하기 시작하였다.

이른바 美通商法 301條에 의해 USTR에 1차 請願書를 提出한 것이다('87.10.5).

●美通商法 301條에 의한 請願

(1차청원 : '87.10.5, 2차청원 : '88.4.29)

1) 1차請願

A. 청원의 背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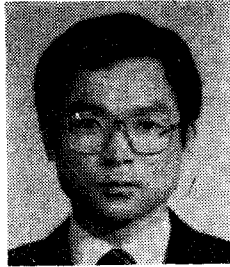
—審判·訴訟등 司法的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認識(판결에 대한 悲觀의 展望)

—1987.9.18 法院에서의 Cefatrizine 判決에 刺戟

—過去의 例로 보아 한국에는 政治的인 壓力이 效果的이라는 인식

問題(完)

중심 解説



洪性夏

(東亞製藥(株) 特許課長)

B. 청원의 主文

知的所有權 보호에 관련된 韓國의 法律·政策 및 訴訟節次의 不公正性을 是正토록 해달라.

C. Bristol이 주장하는 不公正行爲 내용

A) 1986년 韓美通商協定이 타결되었으나 여러가지 例外 때문에 실제 美國이 얻는 利得이 적다.

B) 保社部의 국산화된 품목의 輸入規制 및 保護政策과 國産化促進政策은 미국통상을 여러 측면에서 制限하고 있다.

C) 보사부의 新藥許可시 國內臨床要求 역시 通商制限의 실례가 된다.

D) 한국정부는 國公立研究所를 통하여 美國 특허를 無力化시키는 연구를 支援하고 있다.

E) 한국 特許廳과 法院은 특허의 權利範圍를 너무 좁게 解釋하여 미국특허와 동일한 것을 別個의 발명으로 認定함으로써 미국특허를 無力化시키고 있다.

F) 한국 法院은 特許침해를 制裁하는데 너무 小極的이다. 즉 假處分申請이 즉시 처리되지 않으며, 특허가 無效가 되더라도 그 특허가 유효했을 때 수행된 權利侵害行爲를 制裁하지 않는다. 더욱 마지막에 모든 소송에 이겼다 하더라도 損害賠償額이 너무 적다.

G) 한국 법원의 公訴節次는 너무 시간을 끌기 때문에 侵害한 側이 모든 措置를 취할 수 있도록 만든다.

H) 한국 法院은 特別한 例外를 빼고는 外國人 證人이나 외국에서 이루어진 證據를 선택하는데 小極的이다. 더욱 한국의 學者들은 한국 企業과 密着되어 있어서 미국인이 권리를 주장하기 힘들다.

I) 한국은 韓美通商協定에도 불구하고 條約內容을 國際法이나 國際慣例에 어긋나게 한국에 有利하게 解釋하는 傾向이 있다.

D. 請願內容

A) USTR은 上記 언급한 내용을 調査려 달라.

KIPA 特講

目 次

I. 對美 通商(知的所有權) 紛爭

1. 序 言
2. 一般의 背景
3. 知的所有權 紛爭의 발단
4. 美國의 對外壓力用 通商 制度

II. 東亞의 Amikacin 開發

1. Amikacin이란?
2. 東亞의 開發경위 및 意義
3. Amikacin의 合成方法 및 特許

III. 東亞—BM간의 紛爭

1. 背景 및 經緯
2. 司法的 紛爭
3. 法律外的 紛爭
4. 東亞—BM間的 協商

IV. 本 Case에서 얻은 敎訓

1. 東亞의 對應 側面
2. BM의 對應 側面
3. 兩國 政府의 役割

<고딕은 이번號, 명조는 지난號>

B) 美國 大統領은 이에 관련하여 美國의 通商을 保護하기 위한 諸般措置를 취해주시기 바란다.

C) USTR은 韓國政府로 하여금 동아제약의 아미카신의 生産·販賣·製造方法등에 관하여 完壁한 報告書를 제출토록 해달라.

E. 동아의 對應

—청원에 대한 答辯書 提出

—상기 청원이유는 韓國政府에서 직접 對應할 사항이나 동아가 USTR에 대해 Lobby(Arnold & Porter 法律會社 선임)

—동아는 우리 政府의 立場을 考慮하여 USTR을 刺戟하지 않으려고 노력

—한편 우리 정부에게는 實相을 알림(우리정부는 동아의 讓步 懲添)

—Bristol 청원의 직접 이유는 Amikacin이므로 兩當事者間의 解決方案 模索

F. 結果

—USTR은 동아의 立場에 共感하여 Bristol과의 協

商仲裁

—USTR은 Bristol을 설득하여 청원의 取下를 從適
 —Bristol은 취하
 —表面上 취하이유는 양당사자간의 協商에 障礙가 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었으나, 동아는 동아가 USTR에 제출한 答辯書가 주요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또한 USTR이 청원을 棄却하지 않고 取下를 중용한 것은 Bristol의 體面을 살려주려는 意圖가 內包된 것으로 보임.

2) 2차 請願

A. 背景

—1988.2.23 한국법원의 判決
 —협상에 대한 悲觀的 展望 } 突破口를 마련키 위해
 B. Bristol의 주장(1차 청원내용과의 差異)

구 분	1차('87.10.5)	2차('88.4.29)
USTR 雰圍氣	積極的	小極的
한국측 참석자의견	● 동아의 讓步 要請이 전반적 분위기	● 일부에서 동아의 強力한 對應 勸誘
BM측 立場	● 당시 韓美通商 雰圍氣에 의해 유리해질 수도 있다는 판단	● 法院判決 및 본 사의 海外輸出 등 積極적 대응에 刺戟
內容上 差異	● 保社·藥務行政	● 最後의 Card
	● Pipeline product, 物質特許 補正許容문제 등 한미 통상협정	사 제 사 제
	● 동아방법이 BM 특許에 抵觸된다는 前提	● 權利範圍解釋이 좁다는 주장으로 後退
		● 기타 내용은 거의 동일

C. 동아의 對應

1차 청원시와 同一

D. 結果

—301조에 의한 請願(報復措置 있음)은 事實上 棄却하고 305條에 의한 事實照會(報復措置 없음)키로 결정.
 —사실조회결과 한국의 不公正한 制度慣行이 있으면 301條로 轉換키로 함.

●美通商法 305條에 의한 事實照會

A. 決定內容

通商法 301條에 의한 브리스톨의 請願을 棄却하고 대신 通商法 305條에 의해 다음의 사항에 관한 事實照會(Fact-Finding Inquiry)를 시작하기로 결정.

—한국 特許廳의 特許請求範圍 解釋

—特許認定에 관한 특허청의 差別待遇 可能性

—特許侵害事件에 있어 韓國法院의 特許請求範圍 解釋

—특허침해에 대한 制裁措置의 適切性

B. 決定의 背景

USTR은 301條에 의한 청원을 사실상 棄却하기로 決定한 것이나, USTR로서는 類似한 경우에 있어서의 301條 請願濫發을 억제하고, 議會를 앞세운 美國企業들의 壓力을 소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의 折衷案으로서 305條에 의한 事實照會를 하기로 決定한 것으로 보인다.

C. 決定의 意義

USTR을 비롯한 美國行政府도 동아제약의 Amikacin 特許問題에 대한 한국 特許廳, 法院등의 行政·司法的 判斷 및 節次가 모두 正當한 것임을 認定한 것이고, 또 동아제약의 Amikacin 사업이 合法的이고 正當한 것임을 認定하였기 때문에 브리스톨의 301條 請願을 拒絕한 것이라 판단된다. 이것은 미국의 特許法律會社인 Cushman Darby & Cushman의 검토결과와도 일치한다. 즉, 위의 같은 사실을 迂回的으로 표시한 것이 305條에 의한 事實照會決定이라 할 수 있다.

D. 處理節次

- Task force 構成(共同議長; USTR의 Peter Allgeier, 特許商標廳의 Michael Kirk): 1988.6.
- 1段階로 사실조회할 구체적 事例등 蒐集: 1988.6.17 美國官報에 公告(6월 중순까지 USTR에 제출요청)
- Task force는 수집한 사례들에 대한 Questionnaire를 韓國政府에 通知
- 2段階로 한국을 訪問하여 政府관리들 및 辯護士들과 協議 예정
- 한국 정부는 Task force가 요청한 사항에 대한 答辯書 作成→Task force에 送付
- Task force는 豫備報告書 작성, USTR의 Yeutter 大使에 提出; 1988.12.1까지

E. 事實照會할 사항에 대한 意見

上記 4가지 조회할 사항은 現實的으로 調査가 不可能한 것이며, 이러한 문제들은 Case by Case로 결정할 사항일 뿐만 아니라 學者들이나 法官들의 法律解釋上的 問題로서 정부간의 協商對象이나 資料要請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美國側에서 상기와 같은 4가지 사항에 대한 사실조회의 착수결정은 1986년의 韓·美 知的所有權協

정의 내용이나, 브리스틀의 壓力에 의해 特許廳審査官이 어쩔 수 없이 동아특허에 대한 無效審判을 請求한 事實 등 美國이 우리나라에서 여러가지 파격적인 惠澤을 입고 있음을 볼 때 아이러니라 아니할 수 없다. 結局 미국측은 이 문제를 305條에 繫留시켜 놓고 한국과의 通商協商에서 他讓步를 얻어내려는 것으로 판단된다.

4. 동아—BM간의 協商

協商的 시작은 1986년 初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때는 동아가 Amikacin의 生産·販賣의 모든 準備를 마친 狀態에 있었으며, BM은 동아를 相對로 특허 침해증지 假處分申請, 특허침해증지 訴訟을 法院에 제기하였고, 審査官으로 하여금 동아특허의 無效審判을 청구토록 한 이후였으며 이 밖에도 法律外的인 여러가지 對應手段을 대부분 動員하고 난 직후였다.

그러나 당시 동아의 入場은 이미 確固한 상태였고, BM 역시 가능한 모든 手段을 動員하고 난 후였기 때문에 양측에 接近할 수 있는 協商案의 마련이 극히 어려운 상황이었다.

結局 양측의 協商은 소강狀態로 들어가고, 特許審判 및 訴訟에 모든 것을 걸고 結果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던 중 1987년 9월 Cefatrizine에 관한 判決에서 BM이 敗하게 되자 BM은 Amikacin 판결에 대해서도 非觀的인 展望을 하게 되어 美通商法 301條에 의한 請願을 하기에 이르렀다.

우리 政府에서는 상당한 危機意識을 느끼고 있었고, 동아 역시 301條가 變動되면 國益에 큰 損失을 招來할 수도 있다는 판단에 따라 USTR측과 緊密히 接觸하면서 이들에게 동아의 協商意思를 밝히게 되었다.

USTR에 동아의 協상의사가 傳達되어 USTR이 양측의 협상을 중재하여 約 3個月間 다시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아직까지도 양측의 異見이 거의 좁혀지지 않아 協商은 다시 決裂되고 말았다.

以後 Amikacin에 대한 동아의 勝訴判決(1988.2.23)이 나오게 되자 BM은 다시 協商을 提案하여 동아가 이에 應함으로써 협상을 시작하였으나 最終協商에는 到達하지 못하였다.

BM은 '88.4.29 다시 301條 請願을 하였으나, USTR은 '88.6.13. 301條 請願은 事實上 棄却하고 305조에 의한 事實照會를 決定함으로써 양측의 협상은 더 이상 進展되지 못하였다.

Ⅳ. 本 Case에서 얻은 教訓

1. 동아의 對應側面

1) 警告書翰에 대한 答信('82 동아→Bristol); 계속 동아에 負擔을 줌.

“一特許侵害 않겠다. 一特許權을 認定한다.”

—동아의 Bristol 특허에 대한 無效審判 請求 事件

동아가 BM의 특허를 認定한다고 해놓고 다시 無效審判을 請求하는 것은 信義則에 違反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게 되는 꼬투리가 되었다.

또한 위와 같은 주장은 당시 韓·美通商의 分圍氣에 의해 더욱 增幅되어 동아의 입장을 弱化시키는 동기가 된 것이다. 그러나 特許侵害問題의 발생이 있을 경우에 對抗하는 경우에는 전혀 문제가 안된다는 것이 우리나라는 물론 美國에서도 一般的인 貫行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 行政府에 東亞 立場 說明

BM의 一方的 說明을 들은 우리 行정부에서도 처음에는 동아가 Amikacin을 하지 않겠다는 約束을 어겼다는 見解를 갖고 동아가 Amikacin 事業을 拋棄하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을 非公式的으로 밝히는 契機가 되었다. 그러나 동아가 BM의 Amikacin 特許權을 侵害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歪曲되어 위와 같은 意見이 나오게 된 것임을 알고 나면 紛爭時 사소한 꼬투리가 얼마나 큰 影響을 미치는지를 알 수 있다. 물론 위와 같은 우리 行정부도 동아의 說明을 들은 後 立場이 크게 바뀌긴 했지만 동아에게 상당한 負擔을 준게 事實이다.

—Bristol側이 계속 문제 삼음

初期段階에서 BM측이 이 答信을 효과적으로 利用하여 分圍氣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이끌어 갈 수 있게 되었다.

結論의으로, 警告狀에 대한 答信은 慎重히 해야 하며 可及的 하지 않는 것이 좋을 수도 있음을 알게 된 것이다.

2) 特許情報 監視

—異議申請機會 활용 미흡; Bristol 출원특허 公고시 異議申請은 하였으나, 先行技術情報가 있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活用하지 못하고, 安逸하게 판단하여 특허 등록을 沮止하지 못하였음. 登錄된 後 무효심판을 請求하였으나 警告書翰에 대한 答信이 부담되어 무효심판 청구를 取下하였음.

—特許權 取得後 관련기술정보 監視 未洽; 출원 후

外國에서 公開(公告)된 유사한 特許가 존재하고 있었으나 Bristol이 審査官에게 아르헨티나에 출원한 出願書 寫本을 提供할때까지 이를 알지 못하였음(동아특허가 출원공고된 후인 1984년 미국특허에 유사한 기술이公表된 바 있음). 물론 出願後 발표된 특허는 등록받은 特許에는 影響이 없으나 特許部署로서는 부담이 될까 있음.

—INPADOC 資料 活用 未洽; 早期에 공개되는 노르웨이 등에 BM의 발명이 출원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으며(미리 조사가 가능함에도), 결국 이것이 保有 特許 2건중 1건이 無效되는 原因이 되었음.

노르웨이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명세를 공개하는 特許公報를 발간하지 않고(特許請求範圍만 공보에 실림) 특허청에서 出願明細書의 閱覽만을 許容하고 있으나, 특허청은 이 자료(BM의 출원서 사본)를 刑行物로 認定하며 無효심판의 證據資料로 활용하였음.

3) 取得한 特許權에 對한 過信

—特許를 取得한 이상 最少限 국내에서 事業活動을 하는데는 전혀 問題될 것이 없다는 판단하에 사업을 推進하였으나, 특허 對·美通商이라는 法律外的인 政治的인 影響은 전혀 고려하지 못하여 상당한 시달림을 받았음.

4) 수동적 協商 및 수세적 對應

—正當한 特許權을 가진 이상 合法的으로 사업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01條 發動이라는 政治的인 威脅으로 인하여 USTR 및 우리 정부의 立場을 考慮하여 Bristol과의 협상에서 Initiative를 잡지 못하였으며, 紛爭對應時에도 BM의 問題提起에 대해 答변하는 정도에 그쳐 계속 守勢에 물리는 결과를 招來하였다.

5) 外國出願 拋棄

—동아의 Amikacin 제조방법 發明을 만일 미국 등 外國에도 出願하여 特許權을 獲得하였다면 BM과의 紛爭에서도 보다 유리해질 수도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나, 美國 등 先進國에는 BM의 특허가 物質特許로 登錄되어 있어 消要費用에 비해 특허권을 取得하여도 별로 效用性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外國의 특허출원을 포기하였으나 結果적으로 이것도 좋은 機會을 活用하지 못하는 원인이 되었다.

6) 弘報

—美國政府(USTR) 및 韓國정부와 Bristol을 가급적 刺極하지 않고 조용히 당사자간의 해결이 바람직한 것

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홍보에 小極으로 臨하여 결과적으로는 언론이 正確한 事實報道를 하지 못하도록 하여 동아의 Image에 損傷을 입는 결과를 招來했으며, 우리 行政府의 동아에 대한 理解增進에도 마이너스 효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2. Bristol Myers

1) 原特許의 未出願

Bristol은 Amikacin에 관한 最初의 原特許를 한국에 출원하지 않음으로써 特許法 第45條 第2項의 “新規의 同一物은 同一한 方法에 의해 제조된 것으로 추정한다”에서 “신규의”에 해당하지 않음으로써 제조방법의 추정력을 喪失하여 동아의 Amikacin 事業參與의 동기를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開發한 Process 역시 特許出願을 하지 않아 他人의 參與可能性을 높여주게 되었다.

2) 特許公報 監視 未洽

—동아특허가 出願公告되었을 때 2個月間의 異議申請機會를 놓쳐(이의신청의 이유가 다땅치 않았을지도 모르지만), 順調롭게 특허를 許與받도록 하였다. 나중에 審査官으로 하여금 無效審判을 청구토록 하여 1件의 無效化에는 成功하였으나 特許紛爭에서 큰 도움도 받지 못하고 Image만 損傷되는 결과를 가져왔음.

3) 特許廳 등에 대한 壓力

—正常的인 法的 節次를 직접 밟지 않고 특허청 심사관에 의한 無효심판청구 압력 등 우리 정부에 대한 不當한 要求로 인하여 實質的인 所得도 얻지 못하고 反美感情을 자극하는 결과만 가져왔음.

4) 協商姿勢

—미국은 合理的이고 Fair하다는 우리의 基本認識을 바꾸어 놓는 契機가 되었음.

—Bristol은 協商權限이 없는 인사를 창구로 하였기 때문에 동아와의 實質的인 協商을 어렵게 하였으며,

—協商案에 대한 제안을 하였다가도 不利한 듯 하던 提案事實을 否認하였고, 또한 협상을 위한 會談約束을 어겼으며, 뿐만 아니라 協商過程中에 相對方에게 事前通知도 없이 301條에 의한 再請願이라는 政治的인 解決策을 들고 나와 동아를 當황하게 만들기도 하였음.

—위와 같은 Bristol의 태도는 우리 정부는 물론 USTR에도 影響을 미쳐 301條 請願을 棄却하는 한 요인이 된 것으로 보임.

5) 적극적인 紛爭對應

—正常的인 進행으로는 勝算이 없다 하여도 끝까지 물고 늘어짐.

—사소한 問題라도 모든 問題를 Issue화 하고 있음. 특히 不利할수록 Issue화하는 問題들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음.

—위와 같이 함으로써 국내기업이 지쳐서 拋棄하도록 만들거나

—此後의 분쟁에 對備하여 타사가 쉽게 분쟁이 參與하지 않도록 하는 警告의 效果를 노리고 있는 듯함.

6) 費用에 개의치 않음

—勝算與否에 관계없이 莫大한 費用 感受
—Amikacin Case만도 100만불이상 推算

3. 兩國 政府의 役割

1) 美 國

—기업이 Initiation→정부는 企業의 立場 擁護

—特定企業이 타 산업을 위한 犧牲양이 될 수 없다는 姿勢(한국의 物質特許導入은 미국의 精密化學業界의 이익을 위한다는 명분이었으나, 이로 인해 한국에 대한 GSP 供與 및 他 産業分野가 한국에 讓步한 것은 없음).

2) 韓 國

—美國 정부의 要請→企業의 立場은 理解하면서도 企業을 설득하려는 입장

—特定企業(산업)은 타 산업을 위해 犧牲양이 될 수도 있다는 입장(물질특허도입등 우리의 精密化學産業)

—301條에 대한 過憫反應(정밀화학산업으로 전자나 자동차 산업이 報復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危機意識).

—Bargaining Power

—協商經過에 대한 記錄(예: "Handful" 등) 未洽

—輿論活用 未洽; 대부분 숨기는 戰略(한국에서 일어나는 한국의 사정을 미국을 통해 알게 되는 불합리)

(※)

(案) 特許廳 複寫業務 代行 (內)

本會에서는 對民서어비스業務를 擴大하여 會員을 비롯한 資料利用者에 對한 便宜를 提供하고 效率의인 業務遂行을 하고자 特許廳 閱覽室의 特許文獻 複寫業務를 代行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同 複寫手數料 徵收方法을 아래와 같이 變更 實施하오니 業務에 參考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手數料徵收方法: 現金收納(수입인지는 받지 않습니다)

◎ 金 額: 枚當 100원(從前과 同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本會研修部 (557-1077~8)로 문의바랍니다

KIPA通信 發刊 案内	한국발명특허협회 캠페인
<p>本會는 매일 10일 特許界 뉴스誌 KIPA通信을 發刊하고 있습니다.</p> <p>國內外 特許界 뉴스를 보다 신속하게 알려드리기 위해 發刊하는 KIPA通信의 많은 애독을 바랍니다. 會員社에는 무료 提供되고 있습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KIPA通信 編輯室></p>	<p>1년앞선 특허관리 10년앞선 선진기업</p> <p>발명하는 국민되어 복지국가 건설하자</p> <p>이웃마다 믿는마음 거리마다 밝은마음</p>

<p>本會 新刊</p>	<p>職務發明補償制度考察</p> <p>국판 200면 · 가격 3,000원</p>
------------------	---